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안 제3조)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중대범죄등의 수사 및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

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 1) 감찰관, 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기획조정관, 인사정책기획관, 수사정보관은 차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에 운영지원과,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및 과학수사국을 둠.
- 2) 경제범죄수사국은 경제범죄, 금융범죄, 공정거래·기업범죄 등 사

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반부패수사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 마약류 범죄, 공공안전 관련 범죄 등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과학수사국은 사이버·산업기술유출범죄 등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사무로 함.

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안 제18조부터 제46조까지)

- 1)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둔.
- 2)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사무국·경제범죄수사국·금융범죄수사국·반독점수사국·반부패수사국·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을 하부조직으로 둔.
- 3) 그 밖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사무국을 각각 하부조직으로 둔.

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47조 및 제48조, 별표 2 및 별표 3)

- 1) 중대범죄수사청에 396명(중대범죄수사청장 1명, 1급 수사관 1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8명, 4급 수사관 이하 315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60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둔.
-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2,478명(1급 수사관 6명, 2급 수사관 8

명, 3급 수사관 22명, 4급 수사관 이하 2,198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05명, 경정 이하 39명)의 정원을 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예비비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제3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법 제2조제2호의 중대범죄등(이하 “중대범죄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수사와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위치) 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하부조직)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운영지원과·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 및 과학수사국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밑에 감찰관 및 대변인 각 1명을 둔다.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인사정책기획관 및 수사정보관 각 1명을 둔다.

제6조(차장) 차장은 1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제7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감찰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검토·연구 및 개선에 관
한 사항
4. 사무감사·기강감사 및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5.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6. 수사 과정 등에서의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권
침해 감독·예방에 관한 사항
7.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9. 수사심의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관리
10. 손실보상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관리

11.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찰·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 중대범죄수사청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분석,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대국회 업무의 총괄·조정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조정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 등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6. 국정과제 관련 과제 발굴·선정 및 추진상황 확인·점검
7. 행정심판, 소송사무,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

항

8.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9.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10.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산장비·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조정
14.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의 관리
15.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련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10조(인사정책기획관) ① 인사정책기획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 상훈, 징계 및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수사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수사업무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사·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사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형사정책 관련 제도·정책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수사정보관) ① 수사정보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정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범죄등 정보와 관련된 기획·조정·지원·지휘·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발송·보존·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9. 차량의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13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가. 경제범죄사건, 금융범죄사건, 공정거래·기업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가상자산범죄사건, 보이스피싱범죄사건,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 나. 범죄수익추적·환수 지원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정책·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4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마약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른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라. 자금추적·회계분석 지원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정책·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5조(과학수사국) ① 과학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가. 사이버·산업기술범죄사건

나. 전자적 증거·AI가상자산 분석·지원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대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 연구, 정책 · 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 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6조(수사연구관) ① 수사연구관은 5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은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 · 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③ 수사연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1절 총칙

제18조(직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소관사무를 관할구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제19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명칭 등)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명칭 · 위치 및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1명을 두며, 각 청장은 1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 차장) 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 3명을, 그 밖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차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제2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22조(하부조직) 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사무국·경제범죄수사국·금융범죄수사국·반독점수사국·반부패수사국·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을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복수차장의 운영) 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1차장, 2차장 및 3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1차장, 2차장, 3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1차장은 경제범죄수사국 및 금융범죄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③ 2차장은 반독점수사국 및 반부패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④ 3차장은 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제24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발송·보존·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연급·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9. 차량의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산장비·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압수금품의 접수·처리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건기록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15.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5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범죄 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익추적·환수 지원에 관한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6조(금융범죄수사국) ① 금융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범죄사건 및 가상자산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7조(반독점수사국) ① 반독점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거래·기업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8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

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른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7.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29조(마약수사국) ① 마약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30조(첨단수사국) ① 첨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군사기밀범죄사건, 사이버·산업기술범죄사건 및 보이스피싱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3절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31조(하부조직) ①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 및 사무국을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제32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범죄사건, 금융범죄사건, 공정거래·기업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가상자산범죄사건, 보이스피싱범죄사건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익추적·환수 지원에 관한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33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마약류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

업·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사이버·산업기술범죄사건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른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7.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34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절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35조(하부조직) ①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 및 사무국을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7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5절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39조(하부조직) ①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 및 사무국을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

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1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절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43조(하부조직) ①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 및 사무국을 각각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두는 정

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5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6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47조(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3급 수사관의 정원은 8명을, 4급 수사관의 정원은 46명을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4급 수사관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5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4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수사관의 정원은 175명을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4급 수사관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10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6급 1명, 7급 2명)은 법무부, 8명(6급 1명, 7급 5명, 8급 2명)은 국세청,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 관세청, 37명(경정 2명, 경감 8명, 경위 11명, 경사 16명)은 경찰청, 2명(경사 1명, 경장 1명)은 해양경찰청, 2명(5급 2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

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해야 한다.

제4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제50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
1조제1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
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및 보임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4조 및 「공소청법」 부
칙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영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

원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법 부칙 제4조 및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을 임용하여 이 영에 따른 2급 또는 3급 수사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제12조,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2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3급 수사관의 직위에, 3급 수사관에 해당하는 현원은 4급 수사관의 직위에 각각 보할 수 있다.

[별표 1]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지방 중대범죄수사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부천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수원지방 중대범죄수사청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오산시·화성시·용인시·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평택시·안성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대전지방 중대범죄수사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지방 중대범죄수사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방 중대범죄수사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비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현판·각종 표지판 등을 표기하는 경우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지방수사청”으로,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수원지방수사청”으로,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대전지방수사청”으로,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대구지방수사청”으로,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부산지방수사청”으로,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광주지방수사청”으로 각각 표기할 수 있다.

[별표 2]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총 계	396
수사관 계	333
중대범죄수사청장	1
1급	1
2급	8
3급	8
4급 이하	315
일반직 계	63
4급 이하	60
전문경력관	3

[별표 3]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1항 관련)

총 계	2,478
수사관 계	2,234
1급	6
2급	8
3급	22
4급 이하	2,198
일반직 계	205
4급 이하	205
경찰공무원 계	39
경정 이하	39

[별표 4]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0조제1항 관련)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정원
가. 감찰관 1개 담당관	12명
나. 인사정책기획관	1명
다. 인사정책기획관 1개 담당관	34명
라. 수사정보관	1명
마. 수사정보관 2개 담당관	26명
바. 경제범죄수사국	1명
사. 경제범죄수사국 4개 과	39명
아. 반부패수사국	1명
자. 반부패수사국 4개 과	60명
차. 과학수사국	1명
카. 과학수사국 3개 과	60명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

조직	정원
가.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수사심의담당관	58명
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수사정보담당관	62명
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인권보호담당관	53명
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경제범죄수사국	6명

마.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경제범죄수사국 23개 과	532명
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반부패수사국	6명
사.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반부패수사국 23개 과	629명
아. 지방중대범죄수사청 6개 사무국 6개 과	97명
자.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금융수사국	1명
차.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금융수사국 4개 과	149명
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	1명
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 4개 과	121명
파.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1명
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4개 과	121명
거.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첨단수사국	1명
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첨단수사국 3개 과	116명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97